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63

2014년 3월 4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3년 4월 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4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2014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이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질병치료에 기여하기 위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첫째,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의 기능을 명시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 둘째, 제대혈은행을 통하여 제대혈을 공급받거나 제대혈은행의 시설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 감면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안 제5조 및 제6조)
- 셋째,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가 설치·운영하는 제대혈운영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재대)

(1) 제안 배경 및 개요

○ 본 조례안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이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 시민의 질병치료에 기여하고 의학의 발전과 시민보건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음.
- 이식제대혈 공급에 따른 비용을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증제대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토록 하며, 제대혈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세부사항별 검토결과

가. 기능 관련 (안 제3조)

○ 안 제3조는 “제대혈은행은 제대혈 기증 및 기증제대혈 저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기증제대혈 품질 관리 및 검사, 이식 관리 및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1]에 따른 것으로, 제대혈은행을 개설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대혈은행을 허가 받은 제대혈의 기증, 제대혈의 채취·검사 및 등록, 제대혈의 제조·보관·품질관리 및 공급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임.

-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2011년 12월)받은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위치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현재 운영되어

---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대혈은행의 허가 기준 및 절차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대혈은행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제대혈관리업무
가. 제대혈의 기증·위탁
나. 제대혈의 채취·검사 및 등록
다. 제대혈의 제조·보관·품질관리 및 공급

있는 현실을 제도화 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25,000여 단위의 제대혈을 보관중이며, 인력은 13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2013년 예산은 20억원이며, 이중 서울시 보조금은 5억 5천 9백만원임.

〈표〉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의 기능

조 항	세부 내용	효 과
1. 제대혈 기증 및 기증제대혈 저장·관리에 관한 사항	가임 여성을 비롯하여 일반인들에게 제대혈 기증 홍보를 통해 이식 가능한 제대혈 저장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함	2025년까지 본 제대혈은행의 시설능력 한계인 49,500 단위를 보관할 예정임
2. 기증제대혈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세포생존도가 높은 제대혈을 저장하기 위하여 꾸준한 품질 모니터링과 안전관리 시행	고품질의 제대혈 확보
3. 기증제대혈의 이식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악성 혈액질환 환자에게 이식적합 제대혈 제공 및 고품질의 제대혈 확보를 위한 연구 수행	- 제대혈 활용 활성화 - 제대혈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
4. 제대혈 및 세포치료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기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성체줄기세포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진행	성체줄기세포를 활용한 바이오산업 연구 및 지원
5.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및 세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대혈은행내의 세포배양실 및 우수제조관리시설을 활용하여 세포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세포치료센터로서의 역할 수행
6. 그 밖에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이행에 관한 사항	제대혈 채취, 제대혈은행 정보교환, 제대혈 관리기록 작성 등	국가 지정기증제대혈은행으로서 국가의 제대혈 관련 정책 및 기증제대혈은행 운영 방향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

나. 수익금 (안 제4조)

○ 안 제4조에 “제대혈은행의 수익금은 제대혈 공급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법 제18조제2항[2]에 근거하여, 적격인 제대혈을 환자에게 이식 한 경우, 이식제대혈 공급 수익금으로 구분하고, 부적격인 제대혈은 기초연구용, 의약품 제조의 원료·보조제로 사용 또는 임상시험용, 기타용으로 공급되어 각각 수익금으로 구분하며, 또한, 시설 임대 등에 따른 수익금으로 추가 구분하고 있는데,

- 본 조례안은 제대혈은행의 수익구조를 명문화 한 것임

다. 비용의 산정기준 (안 제5조)

○ 안 제5조는 “제대혈은행을 통하여 제대혈을 공급받거나 제대혈은행의 시설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 등은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법 제18조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 제27조 제2항[3]에 따라 공급하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받은 자가 부담한데 따른 것이며,

---

2)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증제대혈의 관리비용 등)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제대혈제제를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관리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대혈제제의 공급) ② 제대혈은행은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폐기하지 아니한 부적격인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아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 제조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에 한한다.

제대혈은행의 시설을 임대하는 자 역시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식제대혈 공급에 따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정됨으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표〉 비용의 산정기준 관련 (안 제5조 제2항 관련)

비용산출 근거	비용	비용부담자	내용(금액)
가. 이식제대혈 공급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고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대혈 이식을 받은 환자	-1unit : 400만원 -2unit : 600만원
나. 기초연구 목적 제대혈 공급		연구자 및 연구기관	미정
다. 의약품 제조의 원료·보조제로 사용 또는 임상시험 목적 제대혈 공급		연구자 및 연구기관	미정
라. 그 밖에 기타 제대혈 공급		-	-
기타 수익금	전문기관에 따른 감정평가 등	연구자 및 연구기관	미정

라. 비용의 감면 (안 제6조)

○ 안 제6조 제1항에서 “시장은 보관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고 기초연구 목적 제대혈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을 위한 수혜라는 측면에서 감면한 것으로 보임.

다만 산정된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목으로, 안 제6조제2항제2호마목 '다둥이행복카드(자녀수 3명 이상) 소지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서울시외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에게는 '다둥이행복카드'자체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오류로 보여 삭제되는 것이 타당함.

마. 관리·운영의 위탁 (안 제8조)

○ 안 제8조 제1항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4]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 등에 제대혈은행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4)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 이는 법 제17조[5]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제대혈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민간 위탁(서울대학교병원 민간위탁, 기간 : 2013. 1. 1. ~ 2015.12.31.)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사항으로 보임.

〈표〉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민간위탁 현황

○ 시 설 명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2006. 5. 11. 개소)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425 보라매병원 1,10,11층 ○ 시설규모 : 건물 3,089㎡(1층 200㎡, 10층 2,129㎡, 11층 760㎡) ○ 현재 수탁자 : 서울대학교병원(대표 오병희) ○ 위 탁 현 황 - 2007.1.1.~2009.12.31.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위탁(보라매병원 재위탁) - 2010.1.1.~2012.12.31. 서울대병원 위탁(1차) - 2013.1.1.~2015.12.31. 서울대학교 위탁(2차)

5)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7조(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증제대혈은행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1. 제대혈기증 및 기증제대혈 관리 업무
2. 기증제대혈 데이터베이스 등록
3. 기증제대혈의 품질、검사 및 관리의 정확도 평가 업무
4. 그 밖에 기증제대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기증에 관한 홍보 및 기증제대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제대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 “수탁자는 제대혈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대혈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제대혈운영위원회(설치 : 2006년 2월)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장 등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임.

〈표〉 제대혈운영위원회 현황 (2013년 현재)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 colspan="2">위 원</th></tr>
<tr><td colspan="2">위원장</td><td>보라매병원</td><td>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td></tr>
<tr><td rowspan="5">위원</td><td rowspan="4">당연직 (4명)</td><td>서울특별시</td><td>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장</td></tr>
<tr><td>보건복지부</td><td>생명윤리정책과장</td></tr>
<tr><td>제대혈은행</td><td>은행장, 보라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td></tr>
<tr><td>보라매병원</td><td>기획조정실장, 보라매병원 내과 교수</td></tr>
<tr><td>위촉직 (7명)</td><td colspan="2">◦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진료부원장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대한혈액학회 이사장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교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사단법인〕 탁틴내일 실장</td></tr>
<tr><td colspan="2">간사(1명)</td><td>제대혈은행</td><td>의료관리자, 보라매병원 산부인과 교수</td></tr>
</table>

- 다만 제대혈은행의 인력과 조직은 제대혈관리 업무의 특성상 검사, 품질관리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청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대혈운영위원회의 설치와 병행하여 제대혈은행의 집행 조직에 대한 규정이 선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참고〉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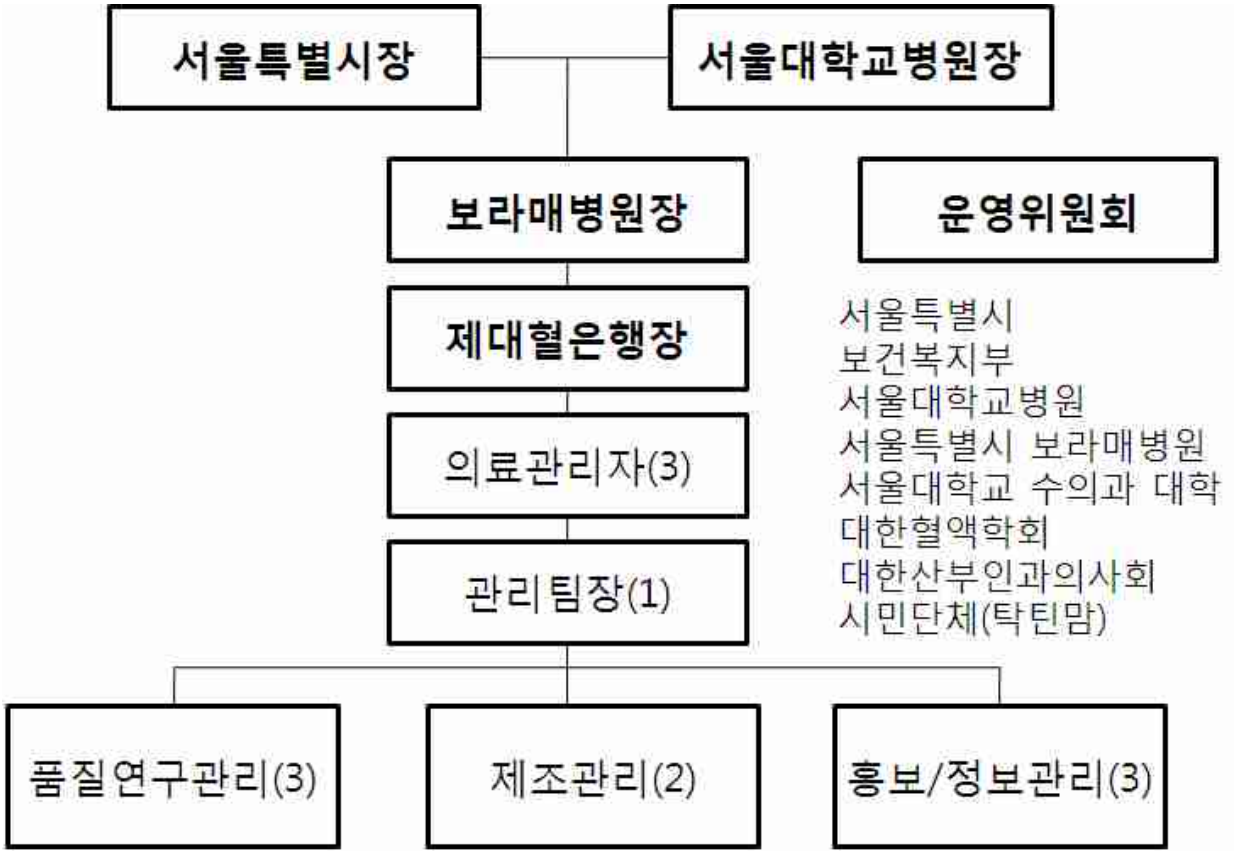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 이미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대혈 기증을 활성화시켜, 산모 및 가족들의 보관료 부담을 낮추며, 서울시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건전한 제대혈 기증 문화의 정착 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제대혈은행의 장은 기증제대혈 관리를 위하여 산모로부터 기증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하며, 제대혈 기증자는 제대혈의 채취전에는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으로부터 제대혈을 공급받은 환자는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으로 산정토록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 이유

○ 이식제대혈 공급에 따른 비용을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증제대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토록 하며, 제대혈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나. 수정 주요 내용

○ 건전한 제대혈 기증 문화의 정착 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

○ 제대혈은행의 장은 기증제대혈 관리를 위하여 산모로부터 기증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함(안 제5조)

○ 제대혈 기증자는 제대혈의 채취전에는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으로부터 제대혈을 공급받은 환자는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으로 산정토록 함(안 제8조제2항)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1141

제안년월일 : 2014년 3월 4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이식제대혈 공급에 따른 비용을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기증제대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토록 하며, 제대혈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일부조항을 수정·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전한 제대혈 기증 문화의 정착 등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

나. 제대혈은행의 장은 기증제대혈 관리를 위하여 산모로부터 기증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다. 제대혈 기증자는 제대혈의 채취전에는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으로부터 제대혈을 공급받은 환자는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으로 산정토록 함(안 제8조제2항)

마. 제대혈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2조제2항,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안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대혈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5조(제대혈 기증에 관한 동의) ① 제대혈은행의 장은 기증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산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산모로부터 기증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제대혈기증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제대혈 채취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3. 제대혈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보관비용 등에 관한 사항
4. 제대혈 기증자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대혈기증에 동의한 산모는 제대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신상 및 병력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대혈 기증동의서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대혈 기증의 철회) ① 제대혈 기증자는 제대혈의 채취전에는

언제든지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대혈은행은 제대혈 기증의사를 철회한 산모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안 제4조 내지 제9조를 제7조 내지 제12조로 하며, 제5조 중 제2항은 삭제한 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에 따라 제7조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제7조제1호 가목을 제외한 수익금은 전문기관에 따른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을 “제7조제1호 가목, 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2항”을 “제7조제1호 가목, 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마목과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8조, 제9조”로 하고, 안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안 제9조를 제12조로 하며, 같은조 제2항 내지 제7항은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대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대혈관리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대혈 관련 연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세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리비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대혈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 제9조 중 제2항 내지 제7항은 삭제 한 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대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대혈관리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대혈 관련 연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세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리비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대혈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와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보건복지부 및 시 보건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과 제대혈은행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의료계 관계자·소비자단체 대표·그 밖에 제대혈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대혈은행 의료관리자가 한다.

안 제10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식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조---------- ---------- ---------- ----------.
〈신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대혈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생략)	제4조(기능)(원안과 같음)
〈신설〉	제5조(제대혈 기증에 관한 동의) ① 제대혈은행의 장은 기증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산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산모로부터 기증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제대혈기증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제대혈 채취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3. 제대혈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보관비용 등에 관한 사항 4. 제대혈 기증자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대혈기증에 동의한 산모는 제대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신상 및 병력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대혈 기증동의서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6조(제대혈 기증의 철회) ① 제대혈 기증자는 제대혈의 채취전에는 언제든지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대혈은행은 제대혈 기증의사를 철회한 산모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수익금) (생략)	제7조(수익금)(원안과 같음)
제5조(비용의 산정기준) ① (생략) ② (생략) 1.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법」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고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8조 (비용의 산정기준) ① (원안과 같음) 〈삭제〉 〈삭제〉

〈신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에 따라 제7조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제7조제1호 가목을 제외한 수익금은 전문기관에 따른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기관에 따른 감정평가 등	〈삭제〉
제6조(비용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가.~라. (생략) 마. 다둥이행복카드(자녀수 3명 이상) 소지자 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비용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감면)** ① ---------- ----------제7조제1호 가목, 나목---------- ----------. 1.~3. (현행과 같음) ② ---------- 제7조제1호 가목, 나목---------- 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가.~라. (생략) 〈삭제〉 3. (원안과 같음) 〈삭제〉
제7조(비용의 청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원인행위가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에는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조(비용의 청구)** ① --------- 제8조, 제9조---------- ---------- ---------- ----------. ②~③ (원안과 같음)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생략)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원안과 같음)**
제9조(제대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 ②~⑦ (생략)	**제12조(제대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원안과 같음) ②~⑦ 〈삭제〉
〈신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대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대혈관리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대혈 관련 연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세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리비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대혈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보건복지부 및 시 보건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과 제대혈은행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의료계 관계자·소비자단체 대표·그 밖에 제대혈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대혈은행 의료관리자가 한다.
제10조(준용)(생략)	**제15조(준용)**(원안과 같음)
〈신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식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이하 "제대혈은행"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대혈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제대혈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대혈 기증 및 기증제대혈 저장·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증제대혈의 품질 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3. 기증제대혈의 이식 관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제대혈 및 세포치료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및 세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행에 관한 사항

제5조(제대혈 기증에 관한 동의) ① 제대혈은행의 장은 기증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산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산모로부터 기증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제대혈기증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제대혈 채취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3. 제대혈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보관비용 등에 관한 사항
4. 제대혈 기증자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대혈기증에 동의한 산모는 제대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신상 및 병력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대혈 기증동의서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대혈 기증의 철회) ① 제대혈 기증자는 제대혈의 채취전에는 언제든지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대혈은행은 제대혈 기증의사를 철회한 산모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익금) 제대혈은행의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대혈 공급 수익금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가. 이식제대혈 공급

나. 기초연구 목적 제대혈 공급

다. 의약품 제조의 원료·보조제로 사용 또는 임상시험 목적 제대혈 공급

라. 그 밖에 기타 제대혈 공급

2. 기타 수익금 : 세포배양실 및 우수제조관리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시설 임대 등 제1호 각 목 외의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

제8조(비용의 산정기준) ① 제대혈은행을 통하여 제대혈을 공급받거나 제대혈

은행의 시설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 등은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에 따라 제7조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제7조제1호 가목을 제외한 수익금은 전문기관에 따른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제9조(비용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보관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고 기초연구 목적 제대혈을 제공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주소지(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두고, 이식제대혈을 공급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라.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마. 다둥이행복카드(자녀수 3명 이상) 소지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대혈기증 산모 및 아기가 이식제대혈을 공급받을 경우
2. 시 외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이식제대혈을 공급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라. 「암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비용의 청구) ① 시장은 제8조, 제9조에 따른 비용부담 원인행위가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에는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받은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비용을 분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대혈은행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이를 소유한 학교법인

2. 제대혈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제대혈은행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제대혈은행 운영에 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2조(제대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수탁자는 제대혈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대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대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대혈관리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대혈 관련 연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세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리비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대혈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보건복지부 및 시 보건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과 제대혈은행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의료계 관계자·소비자단체 대표·그 밖에 제대혈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대혈은행 의료관리자가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제대혈은행의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대혈은행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한 제대혈은행은 이 조례에 따른 제대혈은행으로 본다.

제3조(제대혈은행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대혈은행의 관리·운영 수탁자는 수탁 당시의 약정에 따른다.

수정안조문 대비표

원 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식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4조---------- --- --- ---.
〈신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대혈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생략)	제4조(기능)(원안과 같음)
〈신설〉	제5조(제대혈 기증에 관한 동의) ① 제대혈은행의 장은 기증제대혈의 관리를 위하여 산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산모로부터 기증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제대혈기증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제대혈 채취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3. 제대혈 보존기간, 보존방법 및 보관비용 등에 관한 사항 4. 제대혈 기증자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대혈기증에 동의한 산모는 제대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신상 및 병력에 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대혈 기증동의서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6조(제대혈 기증의 철회) ① 제대혈 기증자는 제대혈의 채취전에는 언제든지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제대혈은행은 제대혈 기증의사를 철회한 산모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수익금) (생략)	제7조(수익금)(원안과 같음)
제5조(비용의 산정기준) ① (생략) ② (생략) 1.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고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8조 (비용의 산정기준) ① (원안과 같음) 〈삭제〉 〈삭제〉

〈신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 제대혈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증제대혈 공급비용에 따라 제7조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비용을 산정한다. 다만, 제7조제1호 가목을 제외한 수익금은 전문기관에 따른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기관에 따른 감정평가 등	〈삭제〉
제6조(비용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가.~라. (생략) 마. 다둥이행복카드(자녀수 3명 이상) 소지자 3.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비용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감면)** ① ---------- ----------제7조제1호 가목, 나목---------- ----------. 1.~3. (현행과 같음) ② ---------- 제7조제1호 가목, 나목---------- 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가.~라. (생략) 〈삭제〉 3. (원안과 같음) 〈삭제〉
제7조(비용의 청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원인행위가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에는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0조(비용의 청구)** ① --------- 제8조, 제9조---------- ---------- ---------- ----------. ②~③ (원안과 같음)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생략)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원안과 같음)**
제9조(제대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생략) ②~⑦ (생략)	**제12조(제대혈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원안과 같음) ②~⑦〈삭제〉
〈신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대혈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대혈관리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대혈 관련 연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세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 관리비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대혈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보건복지부 및 시 보건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과 제대혈은행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의료계 관계자·소비자단체 대표·그 밖에 제대혈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대혈은행 의료관리자가 한다.
제10조(준용)(생략)	**제15조(준용)**(원안과 같음)
〈신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